

의안번호	2215166
의 퇴 인	한창민의원
회 답 일	2025.12.4.
추 계 번호	25D62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억 6,100만원, 2031년 13억 4,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6억 6,800만원(연평균 13억 3,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1,461	1,246	1,295	1,320	1,346	6,668	1,333

주: 본 추계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 실시 사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교육과 인증시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	공공기관의 장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장등”이라 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함)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제1항)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설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를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장등은 영향평가를 평가기관에 의뢰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과 영향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 민간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의 추가재정소요는 민간부문 적용 평가항목 설계 비용,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 교육영상 개발 비용, 중소기업 대상 영향평가 시범사업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민간부문 적용 평가항목 설계 비용은 최근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을 설계한 민간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2] 민간부문 적용 평가항목 설계 비용

구분	목적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민간부문 적용 평가항목 설계	ISMS-P, 고영향 AI 영향평가, 유럽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등 국내외 제도와 정합성 제고	250	▶ 데이터 수집 및 분석: 30백만원 ▶ AI 영향평가 기준 프레임워크 개발: 60백만원 ▶ 대규모 모델 실험을 포함한 리스크 경감기술 연구·검증: 120백만원 ▶ 지속적 평가기준 업데이트 및 기업 등 피드백 수렴 체계 구축: 40백만원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 교육영상 개발 비용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3] 개인정보 처리 직원 대상 교육영상 개발 비용

구분	목적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개인정보 처리 교육영상 개발	평가항목별 주요 점검사항, 결함사항, 모범사례 교육	50	▶ 교육과정 기획·설계: 20백만원 ▶ 영상 시나리오 제작: 10백만원 ▶ 영상제작: 10백만원 ▶ 영상편집 등: 10백만원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중소기업 대상 영향평가 시범사업 비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추진한 기업 대상 컨설팅 사례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가 자문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4] 중소기업 대상 영향평가 시범사업 비용

구분	목적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영향평가 시범사업 (10개社)	중소·영세기업의 개인정보 관리능력 강화	400	▶ 컨설팅 지원: 200백만원(50:50 매칭) - 단가 2,000만원×10개社 ▶ 지원업체 선정 및 영향평가 자문: 200백만원 - 단가 40만원×10명×10개社×5회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본 추계에서 영향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의 추가재정소요는 평가기관 추가 지정심사,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의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계함

- 평가기관 추가(신규)지정 심사비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평가기관 갱신심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5] 평가기관 추가(신규)지정 심사비용

구분	목적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평가기관 추가지정 심사(10개社)	민간부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위한 평가기관 확대	250	▶ 심사비용: 240백만원 - 단가 40만원×15명×10개社×4회 ▶ 소모품 등: 10백만원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비용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교육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함

[표 6]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비용

구분	목적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민간의 복잡·다양한 서비스·시스템에 적합한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225	▶ 교육·시험체계 개편: 40백만원 - 단가 40만원×10명(전문가)×10회 ▶ 전문인력 양성 교육: 90백만원 - 45백만원(임차료, 교재비, 강사료, 실습비, 소모품비 등)×2회 ▶ 전문인력 인증시험: 90백만원 - 45백만원(출제비, 시험장 임차, 시험지·답안지, 감독관비, 시험장 인력비 등)×2회 ▶ 기타 교육·시험 부대비용: 5백만원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전문인력 관리시스템의 고도화 비용은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으로 이원화되어 DB를 통합하는 것으로,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인건비를 추계함

- 관리시스템 고도화는 사업 첫 해인 2027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가정함
-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은 SW개발비 기준 용역 유지관리 요율에 따라 10%¹⁾로 하고, 무상 하자보수 기간(1년, 2028년)을 거쳐 2029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

[표 7]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비용

구분	목적	금액(백만원)	상세내역
전문인력 관리시스템 고도화(통합)	이원화되어 있는 영향 평가 전문인력 관리 시스템의 통합	225	▶ 전문인력 인건비: 225 - 15백만원(월급, 기관부담금 포함)×3명(시스템 설계 전문가)×5개월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본 추계에서 항목별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과 명목임금상승률²⁾을 적용함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비용(평가항목 설계, 교육영상 개발, 중소기업 시범사업)과 영향평가기관의 전문성 강화 비용(평가기관 추가지정,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관리시스템의 고도화)을 합산하여 추계함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억 6,100만원, 2031년 13억 4,6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66억 6,800만원으로 추계됨

1) 요율제 유지관리비는 연간 소프트웨어 용역 유지관리 사업의 대가산정 시 적용하는 방법으로, 적용요율은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준용(자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025.8.)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소비자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명목임금상승률(%)	3.2	3.3	3.3	3.3	3.3	3.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표 8]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평가항목 설계	260	265	270	276	281	1,352
	교육영상 개발	52	53	54	55	56	270
	중소기업 시범사업	416	424	433	441	450	2,164
	소계	728	742	757	772	787	3,786
평가기관 전문성 강화	평가기관 추가지정	260	265	270	276	281	1,352
	전문인력 양성	234	239	243	248	253	1,217
	관리시스템 고도화	240	—	24	24	24	312
	소계	734	504	537	548	558	2,881
합계		1,461	1,246	1,295	1,320	1,346	6,668

주: 본 추계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 실시 사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교육과 인증 시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자율 실시 사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전문교육과 인증시험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면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